

2026년 2분기 아라1동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모집

- 운영기간 : 2026. 3. 30. (월) ~ 6. 26. (금) 12주 [법정 공휴일은 휴강이며, 수업일수에 포함됨]
- 모집기간 : 모든 강좌 100% 인터넷 접수
 - ▶ 인터넷 접수 : 2026. 3. 16. (월) 09:00 ~ 3. 20. (금) 12:00 까지
- 접수방법 : 인터넷 접수 **추첨제** [수강생 본인 명의로 접수 / 미성년자의 경우만 법정대리인 신청]

아라1동홈페이지→ 로그인[회원/비회원] → 주민자치센터 →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좌선택→ 인적사항 입력→ 수강신청완료 → 수강신청확인(마이페이지→강좌신청)→ 추첨후 대상자 선정 → 입금계좌문자안내수신 → 계좌입금[계좌입금시 신청한 수강생명+강좌명 기재 ex)홍길동라인중급, 홍길동캘리, 홍길동어반

- ▶ 모집인원 초과 시 추첨을 통해 수강생 선발
(아라1동 주민을 대상으로 모집정원의 50% 우선 추첨 및 나머지 인원은 전체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함)
- ▶ 수강료 입금계좌 : 수강생 개별 문자통보 / 아라1동주민자치회 계좌입금 [이름+강좌명 반드시 기재]
입금예시> 홍길동라인초급, 홍길동라인중급, 홍길동수채화, 홍길동꽃꽂이, 홍길동어반, 홍길동캘리, 홍길동뜨개질
- ▶ 추첨 및 결과통지 : 2026. 3. 20.(금) 18:00까지 통보예정(문자메세지)
- ▶ 안내문자 수령 후 3.23.(월) 14:00까지 수강료 계좌 입금, **3. 23.(월) 14:00 내 미입금시 자동 접수취소**
- ▶ 대기자안내 : 대기자는 추첨으로 선정되며, 미입금자가 발생할 경우 대기 순번에 따라 개별 안내 예정
 - ※ 문자 수신 차단 및 휴대폰 번호 오기입으로 안내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
 - ※ 기한 내 미입금 시 자동으로 접수가 취소되며 별도 안내되지 않습니다.
 - ※ 온라인 접수가 어려우신 분은 본인 명의의 휴대폰을 지참하여 2층 주민자치센터로 방문해주시면 접수 도와드립니다.
- 감면 및 면제자 확인 안내 (국가유공자, 기초생활수급자, 장애인 등)
 - 감면대상자는 입금계좌문자안내 수신 후 서구청홈페이지→ 로그인→ 마이페이지→ 강좌신청 → 해당강좌클릭 → 감면자격수정→ 수강료선택 및 주민번호 기입→ 감면자격 확인(조회결과:대상자) 후 감면금액계좌 입금 또는 면제(미입금)
 - 감면대상 : 「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 별표2에 의거 서구주민에 한정하여 적용

대상	감면비율
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중 생계·의료급여 대상자, 등록 장애인, 국가유공자 등	100%
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중 주거·교육급여 대상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, 다문화가족	50%

※ 면제·감면자 분기별 1인당 1강좌만 면제 가능 (감면 강좌 외 강좌는 수강료 전액 납부)
 ※ 과정별 소요되는 교재비 및 재료비는 별도 부담 ※ 감면대상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주민자치센터로 유선 문의

- 환불안내 (방문신청만 가능)
 - **수강료 입금 후 온라인 및 전화로 취소 불가**, 반드시 사무실로 방문하여 환불신청서 작성 후 환불 처리
 - 개강 전 폐강 시 전액 환불, 개강 후 수강 취소 시 환불신청서 본인 작성일 기준으로 시행규칙 규정에 따른 환불 처리
 - 수강료 외 교재비 및 재료비 등 환불 불가

○ 문의전화 : 아라1동 주민자치센터(☎ 032-718-5559 / ☎ 032-718-5544)

※ 2026. 3. 26. (목) 기준 접수인원 60% 미만 시, 강사모집 불가 시 폐강될 수 있음
 ※ 프로그램 과목, 시간, 요일 및 교육 장소 등은 행정복지센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2026년 2분기 아라1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안내

구분	연번	프로그램	대상	정원	요일	운영시간	장소	강사	수강료	비고
어린이	1	요가	일반	20	월/수/금	10:00~10:50	강의실1 (2층)	정순란	90,000	편한복장
	2	라인댄스(초급)	일반	20	화/목	10:00~10:50	강의실1 (2층)	임용선	75,000	실내용신발지참 편한복장
	3	라인댄스(중급)	일반	20	화/목	11:00~11:50	강의실1 (2층)	임용선	75,000	실내용신발지참 편한복장
청소년	4	수채화	일반	20	월	10:00~11:50	강의실2 (2층)	이밖누리	75,000	수채화전용지, 물감, 파레트, 붓 개강 후 세부안내
	5	꽃꽂이	일반	20	화	10:00~11:50	강의실2 (2층)	조수진	75,000	개인알차마 준비 회차당 재료비 25,000원
	6	어반스케치	일반	20	화	13:00~14:50	강의실2 (2층)	나혜진	75,000	재료비별도 개강시 안내
	7	캘리그래피	일반	20	수	13:00~14:50	강의실2 (2층)	윤경희	75,000	재료비별도 개강시 안내
	8	뜨개질	일반	20	목	14:00~15:50	강의실2 (2층)	이루리	75,000	재료비별도 개강시 안내
	9	통기타	일반	15	화	15:00~16:50	강의실3 (지하1층)	정종익	75,000	악기개별준비 교재비 20,000원

「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·운영 조례」 시행규칙 [별표 1]

수강료 환불 범위 기준(제20조 2호 관련)

구분	반환사유 발생일	반환금액	
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	가.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	1) 수업시작 전	이미 낸 학습비 전액
		2) 총수업시간의 1/3이 지나기 이전	이미 낸 학습비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
		3) 총수업시간의 1/3이 지난 후부터 1/2이 지나기 이전까지	이미 낸 학습비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
		4) 총수업시간의 1/2이 지난 후	반환하지 아니함
	나.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	1) 수업시작 전	이미 낸 학습비 전액
		2) 수업시작 이후	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 (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)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

※ 비고

1. "학습비 징수기간"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.
2. "총수업시간"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.
3.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